

제24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이규선 의원 대표발의】



2023. 3. 27.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11호로 2023년 3월 16일 이규선 의원 외 5명으로부터 발의되어 2023년 3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 근거 법령 등을 정하고 있는 별표를 현행화하고 보기 좋게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근거 법령의 제·개정에 따른 사무명, 제명, 조 번호 등 수정
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맞춤법 정비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농지법」, 「의료법」, 「약사법」,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입법예고: 해당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구청장이 보건소장·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에 관한 사무명과 근거 법령 등에 관하여 정하고 있는 별표를 상위법령 규정에 맞춰 현행화하고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발의한 안건으로,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별표 제7호는 「약사법」 개정으로 약국개설자 영업을 양수하려는 자가 종전 약국개설자의 지위를 승계하려는 경우 구청장에게 신고하고 구청장은 이를 검토하여 수리하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약국개설자의 지위승계”를 위임사무에 신설하고, “재교부”를 상위법에서 사용 중인 용어에 맞춰 “재발급”으로 정정함.
- 안 별표 제11호 및 안 별표 제17호는 근거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근거법령의 조항을 정정한 것이며,
- 안 별표 제26호부터 안 별표 제28호까지는 근거법령의 개정으로 제명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으로,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근거법령의 제명 및 근거조항을 정정한 것임.
- 안 별표 제33호는 「결핵예방법」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임원명령을

거부하는 경우 구청장이 격리치료를 명하도록 신설됨에 따라 위임사무에 “격리치료 명령”을 추가하고, 입원명령으로 인해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 기존에는 ‘부양가족에 대한 생활보호 조치’만 규정되어 있었던 반면, 개정된 법률에는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 대한 비용지원’으로 보호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위임 사무명을 정정함.

- **안 별표 제36호 및 안 별표 제37호**는 상위법에서 사용하는 용어로 위임 사무명을 정정한 것으로, 각각 “정기예방접종의 실시”는 “필수예방접종의 실시”로, “치매지원센터”는 “치매안심센터”로 함.
- **안 별표 제38호부터 안 별표 제40호**까지는 근거법령의 전부 개정(시행. 2017.5.30.)으로 제명 및 구청장 권한 사무가 대폭 변경됨에 따라 위임사무와 근거법령을 정비함.
- **안 별표 제45호**는 안전상비 의약품 판매자에 관한 사무를 근거 법령인 「약사법」의 규정에 맞춰 위임 사무명 및 근거조항을 정비하고, “지위 승계”, “보고와 검사” 및 “폐기 명령”에 관한 위임 사무를 추가함.
- **안 별표 제48호**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시행. 2023. 6.11.)으로 마약류 취급자에 관한 사무가 시·도지사에서 구청장으로 사무권한 이양이 예정됨에 따라, 구청장이 보건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명에 이를 신설하고 안 별표 제48호에 대해서는 2023년 6월 11일부터 시행한다고 부칙에 명시함.
- 그 외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어려운 한자어를 알기 쉽게 바꾸고 띄어쓰기 등을 정비함.

○ 검토 결과

사무위임 건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법」 제114조, 제116조 및 제117조에 따라 비록 조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사무위임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총괄하고 관리·집행하는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음.¹⁾

그러나 본 조례안은 현 조례의 사무위임 건을 추가하거나 삭제한 것이 아니고, 위임 사무의 근거법령 개정사항 및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법적 적합성 및 행정의 신뢰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개정이라 사료됨.

1) 사무의 위임이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접 관련된 것은 아니나, 사무를 관리·집행하기 위해서는 이를 위한 조직이 필요한데, 행정기관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의 관리·집행을 위한 조직이라는 점에서 사무의 위임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사무의 관리·집행을 위한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할 것인바, 대법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집행기관에 속하는 행정기관 전반에 대하여 조직편성권을 가지며 이러한 고유권한에는 그 설치를 위한 조례안의 제안권이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행정기관의 설치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그대로 의결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사항의 행사에 관하여 지방의회가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으로서 관련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시함.(법제처 의견제시-2021.1.13.)

참 고 자 료

1 지방자치법

제114조(지방자치단체의 통할대표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하고, 그 사무를 총괄한다.

제116조(사무의 관리 및 집행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와 법령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를 관리하고 집행한다.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